

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23) 상정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23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위원회 정 영 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,
-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의 촉진과 경영 의욕의 제고를 위하여 “기업인의 날”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와 기반을 조성하고
- 우수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시상 등의 사기 진작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 시민과 기업인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기업인의 날” 지정 및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정함.(안 제5장 신설)
- 기업 활동 촉진과 경영 의욕 제고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
 금요일을 “기업인의 날”로 지정 운영토록 함.(안 제21조 신설)
-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기업인의 날”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함.
 (안 제22조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없 음	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70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발의년월일 : 2007. 10. 16.

발 의 자 : 정영태의원등21인

1. 제안이유

-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,
-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의 촉진과 경영 의욕의 제고를 위하여 “기업인의 날”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와 기반을 조성하고
- 우수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시상 등의 사기 진작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 시민과 기업인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“기업인의 날” 지정 및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정함.

(안 제5장 신설)

나. 기업 활동 촉진과 경영 의욕 제고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
금요일을 “기업인의 날”로 지정 운영토록 함.

(안 제21조 신설)

다.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기업인의 날”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22조 신설)

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기업인의 날 행사

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, 제21조 부터 제22조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기업인의 날)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,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2조(행사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
2.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, 워크숍
3. 성공 기업인의 사례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5장 기업인의 날 행사</u></p> <p><u>제21조(기업인의 날)</u>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,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<u>제22조(행사)</u>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</u> <u>2.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, 워크숍</u> <u>3. 성공 기업인의 사례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행사 등</u> <p><u>제23조(다른조례의 준용)</u>(중전의 제21조와 같음)</p> <p><u>제24조(시행규칙)</u>(중전의 제21조와 같음)</p>
<p><u>제21조(다른조례의 준용)</u>(생략)</p> <p><u>제22조(시행규칙)</u>(생략)</p>	<p><u>제23조(다른조례의 준용)</u>(중전의 제21조와 같음)</p> <p><u>제24조(시행규칙)</u>(중전의 제21조와 같음)</p>